

제57회 제1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89년 11월 3일 상오 11시 30분

2. 폐 의 : 단기 4289년 11월 3일 상오 11시 30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의사당

4. 사 회 : 부의장 정응표

5. 출석의원

재적의원 16명중

출석의원 8명

결석의원

김삼성, 김경인, 이정권, 임석희, 강영낙, 김상태, 박두순, 조양순

6.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7. 의사일정

◆ 보고사항

1. 제55회 제1차 회의록 통과
2. 제55회 제2차 회의록 통과
3. 제56회 회의록 통과
4. 진정서(미곡상 비료상) 진상조사 결과보고

◆ 부의사항

1. 목포시 공설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의 건
2. 목포시의회 의장 보선의 건

◆ 토의사항

정응표 부의장 2대 중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금일의회는 법정
개회시간 10시부터 1시간만이 경과 한 지금까지 성원미달이옵기 부득이
유회할 내5일 정식개회할 것을 선언

(김경안 외 4의원 청가접수 상황보고)

(상오 11시 30분 현재)

위 회의록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89년 11월 3일

시의원 명남철

시의원 김상대

작성자 서기 주도식

제57회 제2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8년 11월 5일 상오 10시 35분
2. 폐 의 : 단기 4289년 11월 5일 하오 12시 25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부의장 정응표
5. 출석의원
재적의원 16명중
출석의원 11명
결석의원
김경인, 박두순, 조양순, 강영낙, 김상태 의원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각 과장

7. 의사일정

◆ 보고사항

1. 제55회 제1차 회의록 통과
2. 제55회 제2차 회의록 통과
3. 제56회 회의록 통과
4. 제57회(성원미달유회) 회의록 통과
5. 진정서(정미업자 비료상) 진상조사결과 보고

◆ 부의사항

1. 목포시 공설시장 사용 관리 조례개정의 건
2. 목포시 의회 의장 선거의 건

◆ 토의사항

○ 제55회 제1차, 제2차 제58회, 제57회(유회)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

- 이의 없음으로 통과

진정서(정미업자 비료상 제출) 진상조사 결과보고

◇임석희 의원

-목포정미임도조합, 목포비료상조합, 목포해산물상조합라 대한 노총 사이에 체결된 별지협약서 낭독이 있었음

◇정응표 부의장

- 김경인, 조양순, 박두순, 강영낙, 김상태 각 의원으로부터 청가원이 제출되었는가. 김경인 의원을 7일간, 여타의원은 5일각식으로 회의규칙 제64조의거 5일까지는 의장 직권으로 재결 할 수 있으나 김경인 의원 7일간은 의회의 의결이 필요할 것이니 본 건 수리여부를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의원

- 본인 입장이 부득이 한 것 같으니 수리할 것을 동의.

재청, 3청

표결 결과 재석 11명중 만장일치로 가결

◇김남진 의원 긴급 동의

- 현하 우리 목포시 소재 도정공장은 대한민국에서도 뺏지 않는 우수한 공장이 전남 정미소의 14개소나 있는 것입니다.

해방전후를 통하여 그 도정실적을 고찰컨대 도시집단도정제를 폐지하고 산지 도정을 실시한다는 견지에서 그 시설과 규격이 완비한 우수한 공장으로 논이는 반면에 도정시설이 불매한 변방으로 역수송을 함으로서 부당한 경비의 낭비를 초래하는 폐만이 있는 것입니다.

금반에만 하더라도 남해호에서 외미 8,800톤이 입하하였는데 목포시 도정업자배당은 4,000여톤 밖에 안 되었던 것이니 앞으로의 목포시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양곡정책을 원활케하기 위하여 될 수 있으며 목포에서 다량한

양곡을 도정하도록 당의회의 결의로써 관계 요로에 건의서의 작성은 산업분과위원회와 시산업과에 일임하고 건의서 제출처는 전남도지사 농림부장관, 국회의장, 국회 농림분과위원장, 도의회의장, 외자청장

재청---3청

표결 결과 재석 11명중 만장일치로 가결

◇김남진 의원 긴급 동의

- 53회의회 시 본 의원 긴급동의로 이로면과 삼호면의 합병추진을 주장한 바 있었으나 그 당시 의회 공기 험악한 분위기로 말미암아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초대의회시부터 극력추진하여 왔던 것이나 제반애로가 개재하여 미결된채 넘어 왔으나 당 목포시 발전상 불가결의 숙망이오니 본 건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할 구성방안등을 본회의 산회 후 좌담회석상에서 논의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재석 11명중 9표 찬성가결

◇천철수 의원

- 이로면민자체의 호응여부를 알았으면 쓰겠습니다.

◇김삼성 의원

- 이 문제 초대의회시부터 숙제에 있으며 하시장께서도 극력으로 교섭하여 오셨으니 그 결과를 하 시장께 듣기로 할 것을 동의

재청---7청

표결 결과 재석 11명중 전원 가결

◇하동현 시장

- 본 건 시가지확장 문제에 있어서는 초대의회시부터 무한히 노력하여왔었으나 일부 이로면민의 반대로 좌절되었던 것이다. 그 반대 이유로는 목포시로 합병되면 제반부담금이 격증 할 것을 우려할 있는 것이며, 또 합병할 것을 전제로 시내인분요금을 면제하여 주라는 것 등이다. 그리하여 본인의 답변은 부담금 절대로 인상 없을 것이며 인분문제는 당시는 합병만 되면 무료

로 제공하겠노라고 약속하였으며 형편에 따라서는 분실을 두겠으며 분실제도를 택하겠다고까지 언명하였다.

이 결과 이로면 의회측에서도 거개차의를 표하고 있으며 합병할 것을 희망할 있으며 면민측에서도 이에 호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후 면의회 소집시에는 본인이 참석하여 유회할 것이라는 점을 역설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호면 편입문제는 현금 당시 제방사업 진행도중에 있어서 너무 짐이 무거운 감이 있어 난처가 있는 것입니다. 상제는 산회 후 좌담회석상에서 논의키로 하고 이만 끝내겠습니다.

○ 목포시 공설시장 사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심의의 건

◇정응표 부의장

- 본 건 의장의 직권으로 내무산업, 양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심도 심의한 연후 차기 본회의에 상정토록 요망하는 바입니다.

○ 목포시의회 의장 보선의 건

◇정응표 부의장

- 참고로 말하겠으나 재적의원 3분의 2의상이 참석하였으므로 본 건 의장 선거 정족수에 달하였으나 돈목한 의회분위기를 양성한다는 견지에서 차기 의회시 1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할 것을 요망한다.

◇천철수 의원

- 법에 의하여 금일 실시할 것을 요망한다.

◇김창희 의원

- 본 건 의장 선거 문제는 13만 시민이 주시할 있는 것이다.

하인을 선출함으로서 집행부와 합세하여 원만한 시정운영을 도모할 것인지 심사숙고하여 처결할 문제라고 본다.

금일의 의회에도 민중당 측 의원들은 고의로 불참한 것 같은 감을 주고 있으나 우리들끼리만 선출하여 놓으면 감정문제에 흐르기 쉬운 것이니 일응보

특하여 두었다가 차기 회의시 선거토록 할 것을 동의
재청 없음으로 폐기

◇김창희 의원

- 10분간 휴회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11시 50분 현재)

◇정응표 부의장

- 속개 선언

(12시 5분 현재)

의회의장 선거 개표상황

성 명	제1차	제2차
김삼성	5표	6표
무 호	6표	5표

◇정응표 부의장

- 김삼성 의원이 재석의원 과반수의 득점으로서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언

◇김삼성 의원

- 김경인 의장의 불신임을 전후하여 허다한 여론이 비등하였던 것은 사실
임 본 의원을 지지하여 주신 6의원에게는 미안한 일이나 이를 반대하는 의
원이 10인이라고 생각할 때, 이 직책완수에 도저히 감당키난 할 것을 고려하
여 과감히 사의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김삼성, 임석희, 김상대, 김정균, 이정권, 김일섭 의원 퇴장 (12시 24분 현재)

◇정응표 부의장

- 성원미달로 인하여 오후 회의의 유회할 것을 선언 (12시 25분 현재)

위 회의록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89년 11월 6일

시의원 김창희

시의원 김상태

작성자 서기 주도식

협 약 서

목포정미임도조합, 목포비료상과표 임완춘, 목포해산품상조합(이하 갑이라 칭함)과 대한노총 목포미창부 두 노동조합, 운반마차 노동조합(이하 을이라 칭함)과는 목포항에 출입하는 하물작업에 있어서 전추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임금으로 신속, 성실을 기함과 아울러 노자, 협조, 종신을 발휘하여 목포시발전에 기함은 물론 나아가서는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다음 제조항을 협약한다.

제1조 갑은 각하주를 대표하여 으레게 하물의 양하 적선운반등 작업을 일임하고 을은 작업에 있어서 신속, 정확 및 성실을 기하여야 한다.

제2조 갑의 관계 하물에 대한 작업 임금은 기직접하주로 하여금 지불케 하되 작업 종료 즉 시차를 집루하여야 한다.

제3조 하물에 대한 작업 임금은 별지 품종별 임금표와 여히 결정한다.

제4조 임금 조정은 갑을합의를 요하며 합의가 설립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관계관청에 소정법에 의한 알선을 의회키로 한다.

제5조 하물작업에 있어서 하주가 직접 휴대할 수 있는 하물운반에 대하여는 을은 간섭하지 않기로 한다.

제6조 하물작업품종별 임금표를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지시하고 차우 준수케 한다.

제7조 본 협약에 미비된 점에 대하여는 관계노동법령 및 통상관례에 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제8조 본 협약은 단기 428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작업임금에 있어서는 관영요금인상등으로 인한 물가지수의 양등이 차가 심할시는 기양등율에 정비례하여 차우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인상키로 한다.

단기 4289년 11월 1일

양 곡 부

(목포정미임도조합장 박 흥 근)

품 목	단 위	임 금			비 고
		양 룩	적 선	운 반	
정 조	가마니	40	40	40	126근이상은 40환 운반임은 종전에 준함
		35	35	35	
백 미	"	40	40	40	(객선 150톤이상 10환은 가산)
		40	40	40	
맥	"	40	40	40	"
		40	40	40	
속기타잡곡	"	40	40	40	"
		40	40	40	

비 료 부

(목포비료상대표 임완춘)

품 목	단 위	임 금			비 고
		양 룩	적 선	운 반	
비 료	대 당	40	30	운반 15	30 - 50 운반 임금은 본협약체결일전의 예에 준함
		30	30	상하처리 15	

해 산 물 부

(목포해산물상조합장손길동)

품 목	단 위	임 금			비 고
		양 룩	적 선	운 반	
해 초	작당 (100근)	60	60	60	객선 100환
멸 치	관당	7	7	7	
해태 및 청태	상자당	100	100	100	단중량 200근이상시에는 200환
미역	100근당	70	70	70	객선은 100환
멸치젓	1동우당	10	10	10	
새우젓	1통당	100	100	100	객선은 100환, 범선은 80환
건새우	200근정도	130	130	130	200근이내
수루메	작당 200근정도	150	150	150	

단 기타 각종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업주측과 대한노총과 상공회의소와 시측과 합석하에 협약키로함.